

## 6.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0년 12월 4일
- 발의자 : 배지숙 의원, 김재우 의원, 김태원 의원, 이시복 의원, 이영애 의원, 강성환 의원, 김성태 의원, 김지만 의원, 송영현 의원, 안경은 의원, 윤기배 의원, 임태상 의원, 홍인표 의원, 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12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6차 문화복지위원회(2020년 12월 16일) 원안 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배지숙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준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, 감염병·화재·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2조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등에 근거하여 위기상황과 긴급 지원대상자의 용어를 정의하였고,
- 안 제3조는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과 민간법인 등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연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는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6조는 지원요청, 신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발견시 위기상황에 대한 조사·확인 규정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·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- 안 제7조~제9조는 위기가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
- 안 제10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필요시 기준에 따른 사후조사 및 위원회의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- 안 제11조~제14조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및 구·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긴급지원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# [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]

번 호	제 목	주 요 내 용
제1조	목적	조례의 제정 목적 명시
제2조	정의	위기상황, 긴급지원대상자에 관한 정의 규정
제3조	기본원칙	긴급지원대상자 신속 지원 원칙 규정
제4조	시장의 책무	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과 민간법인 등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연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
제5조	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	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
제6조	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	위기상황에 대한 조사·확인 규정과 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·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
제7조 ~제9조	위원회 설치 및 운영, 구성, 회의	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
제10조	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	사후조사 및 위원회의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
제11조 ~제14조	지원절차, 경비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	기관·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및 구·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긴급지원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### □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·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 위기가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임.
-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, 사회적 고립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이 적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 적절하다 하겠음.

<u>기초생활보장(50%↓)</u>	$\Rightarrow$	<u>긴급복지지원(75%↓)</u>	$\Rightarrow$	<u>희망가족돌봄(100%↓)</u>
(우선지원)		(차선지원)		(최종지원)

- 실업, 휴폐업, 파산 등 일시적 충격으로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개연성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75~100% 이하의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미흡하여 일가족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만 대응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.
-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제도권 지원에 중심을 두고 코로나19 등 이슈에 대응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(기준중위소득 75%이하)를 보충적으로 운용함에 따른 일시적 위기가구(기준중위소득 100%이하)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.
-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시도에서도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추진중이며,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 등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,
-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생 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우선 지원되고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없는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 생활안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 일시적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전부터 지원원칙 및 방식 지정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협력체계 및 사무위임, 위탁과 관련하여 구·군, 단체 등과 사전에 조율되어야 하겠으며,

-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	답변
질의없음.	

##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#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